

## 2024년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외국국적동포 유형) 공고

부산광역시는 인구감소지역에 일정기간 이상 거주하려는 외국국적 동포의 정착을 위한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외국국적 동포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4년 4월 12일

### 부 산 광 역 시 장

## 1 개요

- (사 업 명)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 (모집유형) 외국국적동포 유형
- (모집기간) '24. 4. 19.(금) ~ 9. 23.(월)
- (접 수 처) 서구·동구·영도구청 지역특화비자 담당부서 ※방문접수
  - 서구청 가족행복과(부산 서구 구덕로 120, 신관 3층)
  - 동구청 총무과(부산 동구 구청로 1, 2층)
  - 영도구청 평생교육과(부산 영도구 태종로 423, 2층)
- (사업내용)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하는 외국인에게 지역특화동포(F-4-R) 비자로 체류자격 변경 지원

\* 광역지자체장이 추천하는 외국인만이 지역특화동포(F-4-R)비자 신청 가능

## 2 추천서 발급 대상 및 요건

### 1. 대 상

- 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지자체장의 추천을 받은 자
- (기존 거주자) 사업지역으로 선정되기 전 이주하여 해당지역에서 2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외국국적동포
  - (국내 전입자) 비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다가 사업지역으로 가족(배우자, 자녀)과 동반 이주하려는 60세 미만 외국국적동포
  - (해외 전입자) 해외에 거주하다가 사업지역으로 가족과 동반 이주하려는 60세 미만 외국국적동포[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별표5 시증발급신청 등 첨부서류에 관한 고시 국가 限]
- ※ 국외 거주 중인 동포 및 가족은 단기자격으로 입국 후 자격변경

#### 【 구체적 판단 기준 】

- ① 사업지역 선정 전 이주하여 해당 지역에서 2년 미만 거주하고 있는 동포는 거주기간이 2년 경과 된 시점에 “기존 거주자”로 단독 신청하거나 가족 동반 이주를 조건으로 즉시 “국내 전입자”로 신청 가능
- ② 국내·해외 전입자는 동포 1인이 추천지역에 先 이주 후 1년 내 가족이 순차 이주하는 방식도 허용(기간 내 가족 미이주시 체류기간 연장 억제, 단 동반가족이 질병, 기타 특수한 사정으로 즉시 이주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6개월씩 체류기간 연장 가능)
  - ※ 가족이 이미 해당지역 전입하여 동거중인 경우에도 국내 전입자 요건 충족 간주
- ③ 대상 여부 판단이 어려운 경우 본부와 협의
  - ※ 기존 재외동포(F-4)자격 소지자도 지자체장 추천과 2년 이상 거주를 조건으로 단독 지역특화동포(F-4-R)로 세부코드 변경 가능

나. “가” 목에 해당하는 동포의 학령기 미성년 친생자녀(추천 필요)

- (대상) 만 6세 이상 19세 미만 동포
- (추가요건) 다음 ①과 ②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함

- ① 추천지역 내\* 초·중·고에 재학 중이거나 입학 예정인 사람
  - \* 폐교, 특성화교 진학 등 특수한 사정으로 추천지역 내 교육기관 재학 및 입학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광역지역 내 교육기관도 허용
- ② 장기 질병치료 또는 중증 장애 등으로 부득이하게 학교 재학이 어려운 사람
  - ※ ① 또는 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지역동포가족(F-3-2R)으로 변경

## 2. 체류자격 및 허가조건

- (체류자격) F-4-R (지역특화형 재외동포 또는 지역특화동포)
- (체류기간) 1년
  - 「외국국적동포 업무처리 지침」 재외동포(F-4) 체류기간연장 허가기준을 충족하고, **추천지역에 계속 실거주**할 경우 체류기간 연장허가
- (허가조건) 자격변경 후 최소 2년이상 동반가족과 추천지역 거주
  - 국내·외 전입자 요건으로 동포 1인 先이주 후 가족 순차 이주하는 경우, 2인 이상 가족 이주 시점부터 2년 이상 거주 필요
  - 자격변경 후 최초 “2년” 이내 다른 체류자격으로 변경 불가
  - 허가조건은 지역특화동포(F-4-R)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계속 준수되어야 하며, 만약 (1) 본인 또는 가족이 비추천지역으로 전출하거나 (2) 공부상 거소는 추천지역에 두고 있지만 실제 생활은 비추천지역에서 하는 경우 (3) 경제활동을 다른 광역지역에서 하는 경우 등은 허가조건 위반으로 자격취소, 기간연장 억제
- (제한기준) 결핵, 마약중독 등 공중위생에 직접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거나 국내 체류가 곤란한 자에 대해서는 자격변경 제한, 그 밖의 사유는 「외국국적동포 업무처리 지침」 재외동포(F-4) 자격부여 제한기준 준용

## 3. 취업활동 범위

- (지역) 부산광역시 내
  - ※ 타 광역자치단체에서 취업활동 시 허가조건 위반으로 체류자격 취소
- (취업활동)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제외하고 취업활동의 제한을 받지 않음

【 취업 제한범위 비교 】

구 분	비사업지역 거주 재외동포(F-4)	사업지역 거주 재외동포(F-4) 및 지역특화동포(F-4-R)
1. 단순노무행위	제한(고시 39개)	모두 허용
2.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시행규칙 제27조의2제2항 제1~3호)	제한	제한
3. 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취업질서 등을 위해 제한하는 경우	제한(고시 8개)	모두 허용

### 3 제출서류

연번	제출서류	비 고	부 수
1	신청서 (p12 붙임2 서식)	• 신청자 본인 서명 또는 날인 필수	1부
2	외국인등록증 사본	※ 불가 시 여권 사본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
3	거주지 입증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기숙사(숙소) 제공확인서** 등(택1)</li> <li>* 회사 기숙사에 거주하여 임대차계약사실 없이 기숙사에 주소지 등록 및 실거주하는 경우 등 제한적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li> <li>** 숙소제공자의 확인 서명 등이 필요(확인서 하단 제출서류 함께 첨부)하며, 실거주 예정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li> </ul>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p style="text-align: center;">&lt;거주지 입증 관련 실거주 인정 특례&gt; [숙소제공확인서, 임대차계약서 등을 통한 거주지 입증 시]</p> <p>① 자격변경 허가일 기준 30일 이내 새로운 체류지의 시군구 또는 읍면동 혹은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 관서에 전입신고</p> <p>② 자격변경 허가일 기준 30일 이내 해당주소지로 이사 완료</p> <p>③ 특례 조건 위반 시 체류자격 취소</p> <p>※ 임대차계약서의 계약기간 시작일부터 전입신고일까지 15일 초과 시 출입국관리법 제36조* (체류지변경의 신고) 위반(15일 이내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 필수)</p> </div>	1부
4	동포 및 가족관계 입증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인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제적등본</li> <li>- 본인의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제적등본 및 본 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출생증명서, 관련국의 공적서류 또는 공증증서 등</li> <li>- 8촌 이내 혈족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및 그 혈족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제적등본, 관련 국의 공적서류 또는 공증증서, 족보와 친척관계확인서, 공인의료기관 에서 발행하는 유전자감식결과 등</li> <li>- 그 밖에 위 사항에 준하는 증명자료</li> </ul> </li> <li>•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제적등본</li> <li>- 부 또는 모의 7촌 이내 혈족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및 그 혈족과 부 또는 모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기록사항 에 관한 증명서·제적등본, 족보와 친척관계확인서, 관련국의 공적서류 또는 공증증서, 공인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유전자 감식결과 등</li> <li>- 그 밖에 위 사항에 준하는 증명자료</li> </ul> </li> </ul>	1부 (행정복지센터 / 대법원 전자 가족관계등록 시스템 등)

### 4 접수방법 및 추천서 발급

- 신청기간 : '24. 4. 19.(금) ~ 9. 23.(월) 18:00
- 사업지역 : 서구, 동구, 영도구
- 신청자격 : 사업지역에서 2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외국국적동포 또는 사업지역으로 가족(배우자, 자녀) 동반 이주하려는 60세 미만 외국국적동포
- 신청방법 : 구청 담당부서 방문접수(본인 원칙)
- 접수처 : 서구·동구·영도구 지역특화비자 담당부서
  - 서구 가족행복과(부산 서구 구덕로 120, 신관 3층)
  - 동구 총무과(부산 동구 구청로 1, 2층)
  - 영도구 평생교육과(부산 영도구 태종로 423, 2층)
- 추천서 발급 : 발급안내 문자 수신 후 부산광역시청 방문
- 문의처 : 부산광역시 여성가족과 / 구 지역특화비자 담당부서

연번	기관명	부서명	연락처	비 고
1	부산광역시	여성가족과	051-888-1541	문의(접수불가)
2	서구	가족행복과	051-240-4356	문의·접수
3	동구	총무과	051-440-4111	
4	영도구	평생교육과	051-419-4525	
5	부산글로벌도시재단		1577-7716	외국인주민 상담, 통번역 및 장학지원 프로그램 운영
6	부산외국인주민지원센터		051-304-0900	

## 5 기타사항

### <신청 관련>

- (서류반환) 본 신청과 관련된 제반서류는 **스캔 후 즉시 반환**
- (추천서 발급) 부산시청 여성가족과(☎051-888-1541) 연락 후 내방

### <추천서 발급 이후>

- 추천서 발급 후 약 2주 후 '체류자격 변경 신청'을 위해 부산 출입국외국인청 예약 후 방문
  - 부산시에서 법무부와 부산 출입국외국인청 추천명단 제출 후, 체류자격 변경 심사 및 발급 절차 지연될 수 있음
- 추천서 유효기간(3개월) 내 자격변경
  - ※ 지자체장 추천서 효력 소멸 - **추천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까지 유효**
- 제도에 대한 자세한 사항 및 제출양식은 붙임 파일 참조
- 본 공고문 및 지침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사항은 **법무부 지역특화형 비자 운영지침**에 따름

# 목 차

## 붙임 자료

[붙임 1] 지역특화형 비자 안내문 .....	11
[붙임 2] 지역특화형 비자 추천서 발급 신청서 .....	12
[붙임 3] 거주/숙소 제공확인서 .....	13
[붙임 4] 출입국·외국인청 비자신청 제출서류 .....	14
[붙임 5] 해외범죄경력증명서 제출기준 .....	15
[붙임 6] 지역특화형비자 지방자치단체 추천서 .....	16

<붙임 1>

### 지역특화형 비자 안내문

지역특화형 비자는 인구감소지역에서 일정기간 이상 거주하는 조건으로 발급되는 체류자격으로서, 만약 허가조건을 위반하면 출입국관리법 제89조제1항 및 제68조제1항에 따라 체류자격이 취소되고 출국조치 됨을 알려드립니다.

#### 【 허가조건 】

○ 지역특화동포(F-4-R) 및 지역동포가족 체류자격 소지자

- 자격변경 후 최소 2년 이상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에 계속 실거주할 것
  - ▶ 취업, 창업, 학업도 지정된 지역 내에서만 가능

<붙임 2>

### 지역특화형 비자 추천서 발급 신청서 (외국국적동포)

(1쪽)

접수번호				
※ (*)는 필수적 기재 항목입니다.				
개인정보	성명(*)	외국인등록번호(*) 및 여권번호		
	① 주소(*) (현거주지)	(우편번호 : )		
	② 연락처	전화번호(*) (택1가능)	전화	휴대전화
		전자우편	무료 문자서비스 [ ]받음 [ ]받지 않음	이메일수신 서비스 [ ]받음 [ ]받지 않음
현재 체류자격 및 국적(*)	① 현재 체류자격 기재[ ] ② 국 적[ ]			
신청 유형	외국국적동포/가족			
개인정보제공 동의여부(*)	[ ]공공기관 제공 동의 [ ]부동의			
위에 적은 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4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장 귀하				

210mm×297mm[보존용지(2중)70g/㎡]

※ 제출서류 안내

- 외국인등록증 사본
- 거주지 입증서류 :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기숙사(숙소) 제공확인서\* 등(택1)
  - \* 회사 기숙사에 거주하여 임대차계약사실 없이 기숙사에 주소지 등록 및 실거주하는 경우 등 제한적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
  - \*\* 숙소제공자의 확인 서명 등이 필요하며, 실거주 예정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함
- 동포 입증서류 : 본인의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제적등본, 본인과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출생증명서, 관련국의 공적서류 또는 공증증서 등
- 가족관계 입증서류 :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제적등본 등

<붙임 3> ※ 거주지 입증서류로 제출 시 증빙서류 함께 첨부(소유/임차 입증서류, 제공인 신분증)

### 거주/숙소제공 확인서 (Confirmation of Residence/Accommodation)

1. 거주/숙소를 제공 받는 외국인 ( Foreign Tenant / Recipient )			
국 적 (Nationality)		외국인등록(거소)번호 (Foreign Resident Registration /Overseas Korean Resident No.)	
성 명 (Full Name)		연락처 (Phone No.)	
주 소 (Address)	(현주소)		
	(거주예정주소)		
2. 거주/숙소 제공자 (Residence/Accommodation Provider)			
국 적 (Nationality)		주민/외국인등록번호 ( Resident/Foreign Resident Registration No.)	
성 명 (Full Name)			
외국인과의 관계 (Relationship)	<input type="checkbox"/> 친 척 (Relative)	<input type="checkbox"/> 고 용 주 (Employer)	<input type="checkbox"/> 기 타 ( ) (Other)
소유형태 (Ownership Type)	<input type="checkbox"/> 자 가 (Own)	<input type="checkbox"/> 임 대 (Rent)	<input type="checkbox"/> 기 타 ( ) (Other)
주거형태 (Residence Type)	개인주택 등 기 숙 사 <input type="checkbox"/> (Private Residence, <input type="checkbox"/> (Dormitory) etc.)		
	<input type="checkbox"/> 숙 박 시 설 기 타 ( ) (Accommodation) (Other)		
거주/숙소 제공일 (Starting Date)	년(Year)	월(Month)	일(Date) ※ ex) 근로개시일 부터
위와 같이 거주/숙소를 제공하였음을 확인합니다. (I, the undersigned, confirm the provision of accommodation to the abovementioned foreigner.)			
년(Year) 월(Month) 일(Date) 성 명 (Name): (서명/Signature) 업체명 (Company Name): (직인/Official Seal)			
부산 출입국 · 외국인청 (사무소 · 출장소) 장 귀하			
1. 외국인을 고용한 업체에서 기숙사 등을 제공하는 경우 작성방법 - 제공자란에는 고용주, 대표자 또는 법인의 대표자 인적사항 기재 - 확인란에는 대표자 성명과 서명 날인 또는 업체명과 직인 날인 중 택일 2. 숙소제공자가 외국인에게 제공해야 하는 서류 (Documents to be provided to the foreign tenant from the accommodation provider) - 거주/숙소제공 확인서(Confirmation of Residence/Accommodation) - 제공하는 숙소가 본인 소유 또는 임차 물건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등) (Documents of evidence regarding ownership of the provided property: Certified Copy of Register, Residential Lease Agreement, etc.) - 숙소제공자 신분증 사본(Copy of accommodation provider ID Card)			
210mm×297mm[백상지 80g/m <sup>2</sup> (재활용품)]			

<붙임 4>

### 출입국 · 외국인청 비자신청 제출서류

1. 공통

- 지자체 추천서
- 여권 및 사본 1부
- 재외동포(F-4) 통합신청서
- 표준규격사진 1매
- 체류지 입증서류
- 수수료
- 동포입증서류
- 해외 범죄경력증명서

※ 범죄경력증명서 제출·면제 대상 등 세부기준은 「외국국적동포 업무처리 지침」 준용

- 직업 및 연간 소득금액 신고서(직업만 체크)

2. 해당자

- (학령기 동포) 재학·입학 예정 입증서류 또는 진단서 등
- (해외전입자) 건강진단서
- (임의서류) 한국어능력 입증서류

※ 문의사항 : 부산출입국외국인청 ☎ 051)461-3162

<붙임 5>

### 해외범죄경력증명서 제출기준

1. 제출 대상자

- 신청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연속하여 6개월 이상 해외 체류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체류국의 범죄경력증명서 제출
  - 최근 5년 이내 6개월 이상 체류 국가가 2개 이상일 경우 모두 제출
- 단, 다음의 경우는 제출 면제
  - 신청일 기준 만 14세 미만인 사람
  - 최근 6개월 이내에 사증·체류 관련 해외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한 사람
  - 천재지변, 전쟁, 기타 해외범죄경력증명서 발급 대상 국가의 사정 등 해외범죄경력증명서 제출이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재외공관의 장 또는 청장·사무소장·출장소장이 인정하는 경우

2. 요건

- 발급 대상 국가에 소재하는 권한 있는 기관이 발급한 공적 문서로서, 해당 국가에서의 모든 범죄경력이 포함되어야 함
  - 주한 공관이 발급한 범죄경력증명서 불인정
  - 주한 러시아대사관 · 투르크메니스탄대사관이 발급한 범죄경력증명서 인정

3.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4. 기타

- 아포스티유 협약국의 경우 아포스티유 확인이 필요하며, 비협약국의 경우 주재국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 확인 필요
- 범죄경력증명서 원본과 공증된 번역본\* 제출
  - \* 번역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를 기재하고 신분증 사본 첨부

<붙임 6> ※ 구청 제출서류 아님

### 지역특화형비자 지방자치단체 추천서

<b>추천기관</b>		<b>대상</b>	지역우수인재 ( ) 외국국적동포/가족 ( )
<b>인적 사항</b>			
성 명		발급번호	
생년월일		국 적	
외국인등록번호		연락처	
<b>거주지</b>			
광역지역		추천지역	
상세 주소			
<b>취업/창업</b> (※ 지역우수인재만 작성)			
유형	A B C D	허용업종	
회사명		업종 코드	
소재지		연락처	
위 외국인이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법무부에 비자 발급대상자로 추천합니다.  <div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100px;">2024. . .</div> <div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50px;">추천기관 부산광역시청 (직인)</div>			